



보도시점

2026. 5. 19.(화) 11:00
5. 20.(수) 조간

배포

2026. 5. 19.(화) 09:00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추진, 부담은 낮추고 든든함은 높이고!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점심값 20% 지원(월 4만원 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 21일부터 소득 및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과, K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여 명이며,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월~금) 점심시간인 11시부터 15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 지원 금액: 점심시간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지원(월 4만 원 한도)
- * 사용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
- * 제외 대상: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및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https://www.atfis.or.kr/lunch/>)의 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붙임 1.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개요
- 2.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151)
		담당자	사무관	박명훈 (044-201-2157)

- **(사업 개요)** 취약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 비용을 지원하여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
- **(운영 방식)** 정부·지자체·기업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의 점심 외식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시범 사업 추진('26~'28)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①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②근로자 5만명
 - **(지출 방식)** 기업 여건에 따라 카드사 또는 디지털 식권 업체 등 선택
 - 카드사와 협약하여 청구할인, 캐시백, 포인트 지급 등으로 할인 제공
 - 디지털 식권 업체*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현장 할인 방식 등 제공
 - * 근로자가 외식업체 등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정산하는 플랫폼사
 - **(지원 금액)**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
 -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국비 1 : 지방비 1 비율로 매칭)
 - * 1만원(1회 점심값) x 20일(월 근무일 수) x 20%(할인 비율) = 4만원
 - **(사용처)** 외식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구내식당 제외)
 - **(지원제한)** 휴·폐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 및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아침밥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유흥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사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추진 체계)** 공모를 통해 시범 운영 지자체 선정 후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26.5월 ~)



- 지원내용** 평일 점심 외식비용 20% 지원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
 평일 11시부터 15시까지 일반식당, 휴게식당, 제과제빵업에서 결제한 외식비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①중소기업 중, ②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중인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대상자 확인
 ② (식대 지급 여부) 월급 명세서, 식대 계산서 등 식대 지급 증빙서류 확인
 ※ 현재 식대 지급을 하지 않는 기업도 향후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참여 가능 (협약서 등 확인)

- 신청방법** 중소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사업신청 문의
- 지원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선택한 카드 또는 디지털식권으로 결제 시 할인
- 지원제한업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산업분류코드 KSIC-5621 등)
- 결제수단** 카드 : NH농협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디지털식권 : bzp 비플식권, PAYCO, 식권대장, compass

(260412 기준)

지역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서울	농수산유통과	02-2133-4453
부산	농축산유통과	051-888-4972
대구	농산유통과	053-803-3464
인천	농축산과	032-440-4387
광주	농업동물정책과	062-613-3993
대전	농생명정책과	042-270-3813
울산	농축산과	052-229-2945
세종	농산물유통과	044-300-2514
경기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강원	농산물유통과	033-249-2716
충북	농식품유통과	043-220-3682
충남	농식품유통과	041-635-4169
전북	농식품산업과	063-280-4168
전남	농식품유통과	061-286-6442
경북	바이오생명산업과	054-880-3833
경남	농식품유통과	055-211-6434
제주	식품산업과	064-710-3172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8
aT	식품기업지원부	061-931-0723

